이호철(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4차 구술

1. **구술자**: 이호철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7월 18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6. **구술분량**: 05분 5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초선의원 시절 조선일보·주간조선 상대 소송[1)]

면담자 : 그래서 이제 구십일(91)년 시(10)월호에요, 주간조선.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구십일(91)년 시(10)월입니다. 총선[2)]을 앞두고 나오는 거였었구요. 사실관계, 실상, 대응했던 과정 이런 것 좀 기억하세요?

구술자 : 이제 제목은 '상당한 재산가인가?' 인데 실제 내용은 요트 타고, 호화 요트 타고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요트 소유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요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깐, 노무현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때 조세사건도 맡고 부산에서는 돈 잘 버는 빅 파이브(Big-Five) 안에 들어가는 돈을 잘 버는 변호사였던 것, 그때까지는 돈을 잘 버셨지요. 그 뒤에 팔십오(85)년 경부터 시작해서 시국사건 맡고, 노동사건 맡고, 사실상 인제 일이 많아서 노동법률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죠. 강연 다니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부정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만큼 아마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그 과정에서 이제 취미가 요트여서 광안리에 가면 지금도 요트 강습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깐 일주일에 토, 일 두 번 나가서 강습을 받고 한 달에 강습료가 육(6)만원이래요. 그러니깐 저도 지금 월 육(6)만원만 내면 주말에 이틀씩 그러니깐 여덟 번 정도는 가서 요트를 강

---

1) 당시 노무현 의원은 1991년 10월 6일자 주간조선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기사가 허위·왜곡보도라며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1월 12일 제기했다. 1년여에 걸친 재판은 노무현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지법은 1992년 12월 4일 조선일보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리고 판결내용을 알리는 공고문 게재를 명했다. 1심 판결 이후 노무현 의원은 조선일보의 사과 및 화해 요청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2) 1992년 14대 총선(3·24)을 말함

습을 받고 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요트를 빌리는 건 얼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인제 그때 증인으로 나갔던 게 뭔가 하면 저보고 요트를 봤네요. 실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고. 근데 요트가 우리 요트 그러면 (영화) 영영칠(007)에 나오는 그런 요트를 요트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개념을 보니깐 그런 거는 크루즈[3]라 그러고 요트는 평범하게 동력이 없는 바람으로만 가는 것. 그 중에서도 일(1)인용 요트가 있고 이(2)인용 요트가 있는데 노 변호사님이 즐겨 탔던 것은 대학생들하고 어울려 탔던 일(1)인용 아니면 이(2)인용 요트. 소위 스포츠죠, 부산에서는. 소위 딩기형[4]이라고 합디다. 딩기형. 몇 명이 그 뒤에 대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요트를 만들고 탔기 때문에 팔십팔(88)년도 선거할 때 요트 같이 탔던 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왔었어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오고. 제가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재판이 또 일어날 때에도 '이건 호화요트가 아니다, 이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돈 갹출해서 배 만드는데 이백(200)만원인가 들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였죠. 주로 법정에서 공방을 이뤘던 것은 소위 크루즈형과 요트 딩기형, 이 부분에 대한 사진과 설명, 주로 이 부분 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요트 부분 해명하고 그러면서 승소했던 거 같거든요, 일(1)심에서. 일(1)심에서 (승소)하고 그 다음에 인제 소 취하가 됐을 거예요. 소 취하가 됐는데 그게 어쨌든 십사(14)대 총선, 소위 동구에서 선거를 할 때 그것이 그대로 뿌려지고, 그대로 지역 내의 밑바닥에는 허삼수 당시 조직이 '노무현 대통령 상당한 부자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타도어를 뿌리는 아주 근거가 되지요. 그래서 십사(14)대 낙선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삼(3)당 합당 이후에, 주간조선도 상당히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95년) 부산시장 선거 때도 그것이 또 돌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담자 : 당에서도 좀 만류했었을 것 같은데, (만류)했다는데. 당시로써도 정치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흔한 일도 아니었고.

구술자 :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하지 마라는 조언이 많이 들

---

3) 크루저(Cruiser). 7~20m의 갑판정으로, 거주시설과 배수설비, 항해계기, 오락설비 등을 갖춘 대형요트를 말함. 두산백과 참고

4) 딩기(Dinghy).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주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1~3인용의 소형 세일링 요트(sailing yacht)를 말함. 두산백과 참고

어왔대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은 기자들한테는 속되게 말해서 밥이라 그럴까요? 저는 다른 방 의원실에 가서 깜짝 놀랬어요. 보좌관이 정치부 기자 대하는 게 아주 상전으로 대하더라구요. 아주 상전으로 대하고. 우리는 좀 뻣뻣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나쁘게 얘기하면 뻣뻣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당당했다 그럴까요? 그때부터도 우리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실에서도 '하지 마라. 기자들하고 싸워서, 언론사하고 싸워서 좋을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 소송을 걸고 재판을 했던 거지요.

면담자 : 그럼 소송에 대한 대통령님의 당시에 어떤 말씀이라든가 생각 같은 게 있으셨나요? 언급하셨던 게?

구술자 :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사실대로. 그거였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77. - 1981.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1982.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회부장, 홍보부장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홍보부장

1989.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

2003.12 - 2004.0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2005.02 - 2005.04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4 - 2005.08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8 - 2007.12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2007.12 - 2008.0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2012년 현재)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당시 변론을 맡은 노무현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87년 6월 항쟁 전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등에서 ‘노변’과 함께 활동했으며 1988년과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과정에 참여했다.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고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생태농업, 마을 가꾸기 등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보좌했다.